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빈 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
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박상우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빈집에서 제외하고 있는 「건축법」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「주택법」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도 빈집에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계적으로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)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서 “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주택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.	제2조(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)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「건축법」 제22조제2항에 <u>따른 사용승인 또는 「주택</u> <u>법」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</u> <u>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</u>	<u><삭 제></u>
4. · 5. (생 략)	4. · 5.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	
연 락 처	(044) 201 - 4524